

부산지방법원 2022. 7. 12 선고 2021가단30814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창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

담당변호사 박세진, 유명상

변 론 종 결 2022. 5. 31.

판 결 선 고 2022. 7. 1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2020. 3. 3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다.

예비적으로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에 관하여 2020. 3. 3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다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기계를 인도하고, 63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

2022. 3. 11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

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발생 및 확정 등

1) ‘D’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7. 6. 21. E(개명 전: F, C의 배우자) 명의로 ‘G’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던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약정’이라 한다).

○ C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공장에 관한 원고의 임차인 지위를 인수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40,000,000원을 2017. 7. 20.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.

○ C은 “공장의 기계리스 및 공장세 미수금”과 관련하여 20,000,000원을 2017. 6. 21.까지, 10,000,000원을 2017. 6. 30.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.

○ C은 원고가 주식회사 I로부터 시설대여(리스)로 사용하고 있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를 인수한다.

2) 원고는 2017. 12. 12. C과 E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337167호로 위 약정에 기한 금원(7,000만 원) 및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C이 별지 제1목록 기재 기계(이하 ‘이 사건 기계들’이라 한다)를 인수하여 사용하여 왔음에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9. 8.까지 납부한 리스료 85,909,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. 위 법원은 2020. 2. 20.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“C은 원고에게 128,309,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.”를 판결을 선고하였고, 원고의 E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C이 E 명의로 영업을 해왔고 원고도 C이 실제 영업주임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.

3)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(이 법원 2020나45285), ‘이 사건 기계들은 E이 리스료를 완납함으로써 취득한 것이고, 원고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

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'고 주장하였으나, 위 법원은 2021. 1. 20.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의 배척하고 C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21. 2. 5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E은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기계들을 J에게 양도하였고, 원고는 J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양수하여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,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I과의 리스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. 따라서 C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피고의 이 사건 기계들의 점유 등

1) C은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였던 'G'를 폐업하였고, C의 아들인 피고는 2020. 3. 3. 같은 장소에서 'K'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기계들을 점유·사용하고 있다.

2) 이에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20. 3. 17. 실시된 C에 대한 유체동산(이 사건 기계들) 강제집행(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L)은, C이 이 사건 기계들을 점유하고 있지 않고 피고가 사업주로서 이를 점유·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실시되지 못하고 집행 불능이 되었다.

다. C의 무자력 등

C은 신용불량자로서 처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'G'를 운영해왔고,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7,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대출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으며 위 판결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'G'의 폐업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1, 3, 5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, 부산광역시 사상구청, 북부산세무서, M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C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20. 3. 3.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기계들을 증여하였고, 위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자는 E이고,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C이 원고로부터 이를 인수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하였더라도 C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. 피고는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자인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을 뿐이므로 C이 이 사건 기계들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.

3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약정금채권(7,000만 원) 및 리스료 납부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채권(85,909,200원)은 2020. 3. 3. 이전에 발생 및 성립하였으므로,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의 성립

1)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, 갑 4, 7호증의 각 기재,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, C은 이 사건 기계들을 처인 E의 명의로 취득한 이후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가 이 사건 약정을 통해 원고로부터 다시 인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① C은 처인 E 명의로 'G'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기계들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약 4,700만 원 상당의 리스료 지급이 연체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수하여 대출을 받아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해줄 것을 부탁하였다.

② ‘N’이라는 상호로 기계판매업을 운영하던 J과 C 및 원고는, 원고가 이 사건 기계들을 인수한 후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기 위하여, 형식상 기계판매상인 J을 거쳐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, 그에 따라 이 사건 기계들은 $E \rightarrow J \rightarrow$ 원고로 양도되었다.

③ 이 사건 기계들을 양도받은 원고는 2016. 7. 28. 주식회사 I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, J은 주식회사 I에 이 사건 기계들의 가격을 1억 3,000만 원으로 견적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, 원고는 이를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, C이 요구한 연체된 리스료 약 4,700만 원을 우선적으로 변제하였다.

2)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기계들을 C이 다시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, C의 아들인 피고가 2020. 3. 3. ‘K’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기계들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고,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받아 점유 및 사용하는 등 이를 실제 소유하고 있음에도 C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,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.

3)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C이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증여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의 사해 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기계들을 점유·사용하고 있으므로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.

판사 이성

별 지 제1목록(기계)

소재지 : 부산 강서구

품 명	규 격	수 량	비 고
(주)CNC선반	L280	1SET	2013년
	E200	1SET	2013년
	SKT100	1SET	2011년
	SKT100	1SET	2011년

별 지 제2목록(기계)

소재지 : 부산 강서구

품 명	규 격	수 량	비 고
(주)CNC선반	SKT100	1SET	2011년
	SKT100	1SET	2011년

